#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 1823

2024년 6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5월 27일 김춘곤 의원 (찬성17명)

2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0일

3. 상정일자 :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4년 6월 13일 상정· 의결(원안 가결)】

## 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김춘곤 의원)

- 1. 제안이유
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교육·홍보를 강화하는 「여성의 경 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」개정안이 2024.3.26. 공 포된바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여성의 경

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(1)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을 추 가함.(안 제4조제2항제3의2호)
- (2)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(안 제4조제2항제4호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
나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#### 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## 1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  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<sup>1)</sup>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임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'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' 마련과 '교육 및 홍보'를 추가하려는 것임.

#### 2 개정안의 검토사항

본 개정안은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고, 같은 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신설함. 또한부칙에서 시행일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를 명시하고 있음. 자세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sup>1)</sup>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(2024년 3월 26일)

<sup>●</sup> 법률 제20418호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<sup>3</sup>의2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

부칙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연도별 시행계획 등) ① (생 략)	제4조(연도별 시행계획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의2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
<u>&lt;신 설&gt;</u>	4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
<u>4</u> . (생 략)	<u>5</u> . (현행 제4호와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 본 조례안의 상위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정책 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,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 단절 현황과 전망,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 방에 관한 주요 시책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<sup>2</sup>).

<sup>2) 「</sup>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제5조(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<sup>1.</sup>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

<sup>2.</sup>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

<sup>3.</sup>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

- 더불어 제3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 획3)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 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①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, ②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, ③다변화되는 일 방식·영역 대응, ④돌봄 지원체계 강화, ⑤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체계 정비의 5개 영역과, 13개 중점과제, 102개 세부과제로 구성하고 있음.
- 이에 개정안은 시행계획에 '지원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'과 '교육 및 홍보'를 명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보이며 상위법과 법령의 체계화를 갖추고 있어 타당해 보임.
- 특히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제3조4)
  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

<sup>4.</sup>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· 변경하는 때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<sup>3)</sup> 참고: 제3차 경력당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(2020~2024)

<sup>4) 「</sup>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,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하고 있으며,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에서 명시하는 지원확대와 재원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.

서울시 집행부서의 의견도 상위법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
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수용의 입장임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Ⅷ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

##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춘곤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823 발 의 년 월 일: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:김춘곤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규남, 김영철, 김원중,

김재진, 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박·석, 박칠성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이봉준, 이상욱, 최민규 의원(17 명)

#### 1. 제안이유

○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 달 및 교육·홍보를 강화하는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개정안이 2024.3.26. 공포된바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 여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함.(안 제4조제2항제3의2호)
- 나.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(안 제4조제2항제4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: 신구조문대비표

#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의2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
- 4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립하 는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연도별 시행계획 등) ① (생	제4조(연도별 시행계획 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	2
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의2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
	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
	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
<u>&lt;신 설&gt;</u>	4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
	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
	<u>보</u>
4. (생략)	<u>5</u> . (현행 제4호와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#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# 1. 판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4조(연도별 시행계획 등)에 시행계획 수립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여지가 있으나 확인결과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경제활동 촉진1)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및 교육·홍보2)를 기시행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제승

**2** 02-2180-7954

e-mail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<sup>1) 2024</sup>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운영(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)

<sup>□</sup> 사업목적

<sup>•</sup>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촉진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

<sup>·</sup> 경력단절 여성 및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들에게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촉진

<sup>□</sup> 사업내용: <구직활동지원금 지원> / <일경험 지원> / <고용촉진지원금 지원>

<sup>□</sup> 소요예산 : 4,007,643천원(전액 시비)

<sup>2) 2024</sup>년 여성능력개발원 운영(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)

<sup>□</sup> 소요예산 : 5,173,308천원(전액 시비)

<sup>⇒</sup>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(서울시여성가족재단→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→서울광역새일센터) 기시행